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소형발전소법

주체 96(2007)년 4 월 11 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2206 호로 채택

주체 105(2016)년 11 월 23 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1421 호로 수정보충

주체 111(2022)년 10 월 25 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1092 호로 수정보충

제 1 장 중소기업발전소법의 기본

제 1 조 (중소기업발전소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중소기업발전소법은 중소기업 발전소의 건설과 운영, 전력 리용에서 제 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 2 조 (중소기업발전소의 정의)

중소기업 발전소는 2 만 ! ㄱ까지 의 발전능력을 가진 발전소이다.

중소기업발전소에는 수력, 화력, 조수력, 태양빛, 풍력, 생물질 등 여러가지 에너르기자원에 의거하는 발전소가 속한다.

제 3 조 (중소기업발전소의 건설원칙)

중소기업발전소건설을 다그치는것은 나라의 전력생산을 늘이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중소기업발전소건설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이고 내부원천을 적극 동원리용하여 중소기업수력 발전소건설을 기본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에너르기자원을 리용한 중소기업 발전소를 시대 특성과 경제적실리에 맞게 전군중적운동으로 건설하도록 한다.

제 4 조 (중소기업발전소의 운영원칙)

중소기업발전소의 운영은 발전설비의 가동률을 보장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중소형발전소의 통합전력관리체계를 바로세우고 설비관리, 기술관리사업을 개선하며 그 운영을 정상화하도록 한다.

제 5 조 (중소형발전소의 전력리용원칙)

중소형발전소의 전력리용을 바로하는것은 전력손실과 랑비를 없애기 위한 기본방도의 하나이다.

국가는 중소형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자체의 실정에 맞게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한다.

제 6 조 (과학연구성과의 도입원칙)

국가는 중소형발전소의 전력생산과 리용효률을 높이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그 성과를 중소형발전소운영에 적극 받아들이도록 한다.

제 7 조 (전기절약, 전력시설물보호원칙)

국가는 인민들속에서 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생산된 전기를 절약하며 중소형발전소의 전력시설물을 적극 보호하도록 한다.

제 8 조 (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중소형발전소를 건설, 운영하거나 중소형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개별적공민에게 적용한다.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 2 장 중소형발전소의 건설

제 9 조 (중소형발전소건설의 기본요구)

중소형발전소의 건설은 나라의 전력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하기 위한 사업이다.

중앙전력 공업지도기관과 중소형발전소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소형발전소 건설에 앞서 에네르기자원을 구체적으로 조사한데 기초하여 건설위치를

바로 정하고 설계를 과학적으로 하며 년차별 건설목표를 세우고 경제적효과성이 높은 대상부터 계획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제 10 조 (건설계획의 작성)

중소형 발전소의 건설 계획 작성은 국가계획 기관이 한다.

국가계획기관은 전력수요와 로력, 자재, 설비조건 같은것을 고려하여
중소형발전소건설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 11 조 (기술과제의 제출과 검토)

중소형발전소를 건설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술과제를 작성한 다음 대상의 규모에 따라 중앙계획지도기관 또는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앙계획지도 기관과 중앙전력 공업지도 기관은 기술과제를 30 일안으로 검토 처리하여야 한다.

제 12 조 (건설설계의 작성)

중소형발전소건설설계의 작성은 전력설계기관 또는 해당 설계기관, 기업소가 한다.

전력설계기관과 해당 설계기관, 기업소는 측량, 지질조사, 위치선정 같은것을 정확히 하며 승인된 기술과제에 따라 경제적효과성을 타산하여 합리적인 설계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 13 조 (건설설계의 심의, 승인)

중소형발전소건설설계에 대한 심의와 승인은 해당 설계지도기관이 한다.

전력설계기관과 해당 설계기관, 기업소는 작성한 설계안을 대상의 규모에 따라
중소형발전 소지도기관 또는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 해당 설계지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4 조 (건설계획의 맞물림)

국가계획기관은 건설주와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에 중소형발전소건설 계획을 정확히 맞 물려 주어야 한다.

건설계획에 맞물리지 않은 대상은 시공할수 없다.

제 15 조 (시공계약)

건설주와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소형발전소의 건설계획에 따라 시공계약을 맺어야 한다.

맺은 시공계약은 어김없이 리행하여야 한다.

제 16 조 (시공공정별 검사)

건설주와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검사원을 두고 시공의 질검사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질검사에 합격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공정의 공사를 계속할수 없다.

제 17 조 (조업 기일의 보장)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소형발전소의 건설을 설계와 표준공법의 요구대로 하며 조업 기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승인받지 않은 설계로 중소형발전소를 시공하거나 설계를 변경시키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 18 조 (실 리있는 중소형수력 발전소의 건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실리가 많은 중소형수력발전소를 먼저 건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력자원을 정확히 조사하고 수력지점을 바로 정하여야 한다.

제 19 조 (중소형화력발전소의 건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실정에 맞게 중소형화력발전소를 건설하여야 한다.

중소형 화력발전소의 건설을 원료, 공업용수보장조건과 수송조건 같은것을 타산하여 전력과 열을 종합적으로 리용하고 경제적효과성을 보장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 20 조 (자연에너지발전소의 건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태양빛, 풍력, 생물질, 조수력 같은 자연에너지를 리용한 발전소를 건설하여야 한다.

자연에너지를 리용한 발전소의 건설을 기후, 지리적조건 같은것을 타산하여 전망성있게 하여야 한다.

제 21 조 (발전설비의 규격화, 표준화, 계열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소형발전설비를 규격화, 표준화하고 생산을 계열화하여야 한다.

중소형발전설비를 자체로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규격대로 생산하며 앞선 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발전설비를 부단히 갱신하여야 한다.

제 22 조 (중소형발전소건설의 종합검사, 준공검사)

건설주와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소형발전소의 건설이 완공되면 종합검사를 한다. 음 대상의 규모에 따라 해당 건설감독기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종합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중소형발전소는 준공검사를 받을수 없으며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중소형발전소는 운영할수 없다.

제 3 장 중소형발전소의 운영

제 23 조 (중소형발전소운영의 기본요구)

중소형발전소의 운영을 바로하는것은 전력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중소형발전소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발전설비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여 전력생산을 늘여야 한다.

제 24 조 (전력생산계획의 시달)

중소형발전소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소형발전소의 발전능력에 따르는 전력생산계획을 작성하여 국가계획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은 중소형발전소의 발전능력을 정확히 타산하여 전력생산계획을 시달하여야 한다.

제 25 조 (전력생산계획의 수행과 변경)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시달받은 전력생산계획을 월별, 분기별로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전력생산계획을 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국가계획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6 조 (전력생산의 정상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발전설비를 현대화, 과학화하고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전력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야 한다.

제 27 조 (중소형수력발전소의 물관리)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언제, 취수구, 수문, 수로 같은 시설을 제때에 정비하고 물관리를 과학적으로 하여 높은 수위와 구조물의 안전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저수지의 굴착과 준첩 같은것을 정상적으로 하고 도중취수구를 신설, 확장하여 더 많은 물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 28 조 (전력시설의 보호)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소형발전소보호구역에 나무를 많이 심거나 보호시설물 같은것을 만들어 가물, 홍수, 돌사태, 벼락 같은 피해로부터 전력시설을 보호하여야 한다.

겨울에는 물뽑기 같은 추위에 의한 피해막이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 29 조 (발전효률의 제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소형발전소의 설비를 정상적으로 정비보강하여 타빈과 풍차, 태양빛전지판의 발전효율을 높여야 한다.

효율이 낮은 설비와 기술공정은 개조, 갱신하여야 한다.

제 30 조 (설비의 점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소형발전소의 설비점검을 정상적으로 조직하며 설비의 불량 개소를 찾아 등록하고 퇴치하여야 한다.

설비점검으로 퇴치할수 없는 불량개소는 보수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 31 조 (설비의 보수)

중소형발전소의 설비보수는 소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누어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보수계획을 정확히 세우고 보수주기를 지키며 발전설비의 가동률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32 조 (설비의 폐기, 이관, 인수)

중소형발전소의 설비에 대한 폐기, 이관, 인수는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과 설비관리 감독기 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수 있다.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과 설비관리감독기관은 해당 승인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30 일안으 로 검토처리하여야 한다.

제 33 조 (전력생산실적자료의 장악)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소형발전소의 전력생산실적자료를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그것 을 해당 중소형 발전소지도기관과 통계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소형발전소지도기관은 지역적인 중소형발전소의 전력생산실적자료를 장악하여 중앙전력 공업지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은 국가적인 중소형발전소의 전력생산실적자료를 장악하여 정기적으로 중앙계획지도기관과 중앙통계 기관에 내야 한다.

제 4 장 중소형발전소의 전력리용

제 34 조 (중소형발전소전력리용의 기본요구)

중소형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것은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중소형발전소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소형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자체의 전력수요를 보장하는데 리용한다.

중소형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으로 자체의 전력수요를 보장할수 없는 경우 국가전력계통의 전력을 리용할수 있다.

제 35 조 (국가전력계통의 연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소형발전소와 전력소비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중소형발전소의 전력계통을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고 해당 송배전기관에 의뢰하여 가까이 에 있는 국가전력계통에 연결하고 전력을 리용할수 있다. 이 경우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의 급전지휘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 36 조 (여러 중소형발전소의 전력계통구성)

한 지역에 있는 여러개의 중소형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은 하나의 전력계통을 구성하고 공동으로 리용할수 있다. 이 경우 중소형발전소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 37 조 (남는 전력의 공급)

중소형발전소를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리용하고 남는 전력을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주민세대에 공급하거나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전력계통에 넣을수 있다. 이 경우 전력시설공사를 전력을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제 38 조 (전력공급계획과 계약)

중소형발전소지도기관은 중소형발전소의 전력생산계획에 기초하여 전력공급계획을 세우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

중소형 발전소지도기관과 전력 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력 공급계획에 따라 계약을 맺고 이행하여야 한다.

국가전력 계통에 연결되어 있으나 중소형발전소지도기관에서 전력공급계획을 시달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지역 송배전기관과 계약을 맺는다.

제 39 조 (전력공급과 소비의 계산)

중소형발전소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력 계량수단을 정기적으로 검정하며 전력공급과 소비실적을 정확히 계산하여야 한다.

제 40 조 (전기사용료의 지불)

중소형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전력공급량에 따라 정해진 전기사용료를 물어야 한다.

제 41 조 (국가전력계통의 전력 리용신청)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갈수기 또는 기타 사유로 전력을 생산하지 못하거나 부족할 경우 국가전력계통의 전력을 리용할수 있다. 이 경우 승인신청문건을 송배전기관에 내야 한다.

송배전기관은 승인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10 일안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 42 조 (국가전력계통의 전력차단)

국가전력계통의 전력을 임시로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소형발전소에서 전력을 다시 정상적으로 생산할 경우 송배전기관에 의뢰하여 국가전력계통의 전력공급을 차단하여야 한다.

전력을 2 중으로 공급받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 43 조 (시, 군이 건설한 중소형발전소의 전력리용)

시 (구역) , 군자체로 건설한 중소형발전소의 전력 리용은 중소형발전소지도기관이 정한데 따른다.

중소형발전소지도기관은 전력공급대상을 정확히 확인하고 전력을 공급하여야 한다.

제 44 조 (전력의 효과적리용)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교차생산조직을 합리적으로 하고 설비와 생산공정을 전기절약 형으로 개조하며 전력의 원단위소비기준을 낮추어 공급된 전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송배전체계를 정비하고 도중손실, 무효전력, 과대용량 같은것에 의한 전력량비현상을 없애야 한다.

제 5 장 중소형발전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 45 조 (중소형발전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중소형발전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중소형발전소의 건설과 운영 , 전력리용에 관한 국가의 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중소형발전소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 46 조 (중소형발전소사업에 대한 지도기관)

중소형발전소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전력 공업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은 중소형발전소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 47 조 (중소형발전소지도기관의 지도)

중소형 발전소지도기관은 관할지역 기관, 기업소, 단체의 중소형 발전소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소형발전소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중소형발전소지도기관과 합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 48 조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의 보장)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소형발전소의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중소형발전소의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은 다른데 돌려 쓸수 없다.

제 49 조 (중소형발전소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중소형발전소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과 중소형발전소지도기관,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과 중소형발전소지도기관,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중소형발전소사업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 50 조 (전력생산과 리용의 통제)

중소형발전소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현대적인 계량수단을 리용하여
중소형발전소

의 전력생산과 리용을 통제하여야 한다.

계량수단은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정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 51 조 (민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손해를 준 당사자에게는 위약금, 손해 보상 같은 민사적책임을 지운다.

제 52 조 (벌금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해당한 벌금을 물린다.

1. 전력생산실적을 허위보고하였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 100 만~150 만원
2. 전력을 낭비하였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50 만~150 만원, 국민에게는 3 만~10 만 원
3. 전력을 2 중으로 공급받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70 만~100 만원,
국민에게는 4 만~7 만원

제 53 조 (중지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중소형발전소의 건설과 운영, 전력리용을 중지시킨다.

1. 심의, 승인되지 않은 설계로 건설할 경우
2. 설계와 공법의 요구대로 건설하지 않을 경우
3. 종합검사와 준공검사에서 합격하지 못하였을 경우
4. 전기사용료를 정해진대로 물지 않았을 경우

제 54 조 (경고, 엄중경고,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강직, 해임, 철직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 개월 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시공의 질을 보장하지 못하였거나 설계와 공법의 요구대로 건설하지 않아
조업기일보장

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2. 전력생산계획을 미달하였을 경우
3. 전력시설보호 또는 설비점검, 보수를 바로하지 않아 전력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4. 승인없이 설비를 폐기 또는 이관하였을 경우
5. 전력생산실적을 허위보고하였을 경우
6. 승인없이 국가전력계통에 전력선을 연결하여 전력을 리용하였을 경우
7. 전력 공급과 소비의 계산을 바로하지 않았거나 전기사용료를 정해진대로 받지 않았거나 물지 않았을 경우
8. 승인되지 않은 대상에 전력선을 연결해주었을 경우
9. 전력을 2 중으로 공급받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10. 중소형발전소에 보장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다른데 돌려췌을 경우
11. 중소형발전소의 전력생산 또는 전력리용에 대한 통제를 바로하지 않았거나 전력계량수단을 정해진 장소에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로 전력생산계획을 20%이상 미달하였거나 2 만 원분정 도이 상의 재 산적 손실을 가져 오게 하였을 경우에는 3 개 월 이 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처벌 또는 강직, 해 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 55 조 (형사적책 임)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책 임을 지운다.